

낙농산업의 안정을 위한 제도 추진 방향

I.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현황과 문제점

1. 전업, 전문으로하는 가족단위 낙농가 규모 육성

- 젖소 경산우 40두내지 50두 규모의 사육두수가 50 내지 70%는 되어야 경영합리화와 낙농 기반이 안정될 것임.

표1. 젖소 50두 이상 사육규모 농가수 ('97. 12)

구 분	'86	'91	'95	'97	'97/'91(%)
사 육 농 가 수 (호)	516	610	1,325	2,331	382
총 사 육 두 수 비 율	10.8	10.9	17.7	31.1	285

※1) 젖소사육두수의 경산우 비율을 55%로 본다면 젖소 50두이상 사육농가의 평균두수는 '97년말에 72두로서 경산우 두수는 40두로 추정된다.

- 2) 젖소 50두 이상의 사육두수비율이 31%로는 전국적인 원유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향상에는 한계가 있음.

2. 원유의 과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 것이 없음.

- 우유과잉이 처음 발생한 1973년 이후 7번째 분유체화를 맞고 있으며 25년간 12년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격년주기의 과부족 현상을 맞고 있다고 볼 수 있음.
- 원유의 판매와 확보를 위하여 낙농가와 유가공장간에 치열한 원유확보와 집유기피로 분쟁 상존
- 원유쟁탈과정에서 낙농가와 유가공업체는 모두 정부에 불만 표시
-그러면서도 제도마련은 기피하는 경우가 많음.

3. 우유허성에 맞는 유통체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음.

- 낙농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모든 나라는 원유의 집유일원화와 검사공영화는 기본사항이지 개선사항이 아님.
-원유는 완전자연식품이므로 집유과정과 유통과정에서 자연에 노출되든가 다른 용기를 거칠때마다 품질이 나빠짐.
- 원유집유주체 61개소, 유가공장 49개소로서는 더좋은 원유와 유제품을 생산·공급 및 경제적인 집유관리를 하기는 어려움.
-집유비는 집유주체에 따라 원유 kg당 18원 내지 85원임.

- 시·군 단위에 2개 이상이 점유하는 비율이 80%임.
 - 원유검사 등의 검사 표준 모델이 없으며 검사기기의 종류에 따른 차이에 대한 조정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.
 - 원유검사주체에 따라 검사비는 kg당 2원에서 14원임.
4. 유제품의 수입자유화('95년과 '96년)에 의한 국내 유제품의 잠식을 예방할 장치가 없음.
- 혼합분유와 치즈수입량 : ('93) 3,507천톤 → ('95) 36,241천톤 → ('97) 42,750천톤
 - 원유소비가 적은 비수기 (11~3월)에는 원유생산량 대비 106%(성수기 : 116%)가 되어 수입제품의 잠식이 심각함.
5. 우리나라 낙농산업 40년에 원유와 유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제도마련이 미흡 하였으며 제도의 마련 및 관리와 수급안정을 전담할 전문기구가 없음.
- 원유위생등급에 의한 가격제도 시행 : '93년도
 - 원농진흥법 등 제도마련을 정부에서는 '76년, 87년, '91년, '95년에 시도하였으나 '97년 7월에 개정되었음.
6. 낙농가의 급격한 감소 대처방안, 원유와 유제품의 품질향상,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·가격안정, 유통체계정립, 수입유제품의 잠식방지 및 자조금제에 의한 소비확대 등을 위한 제도마련과 시행은 시급한 현실과제임.
- 어떠한 제도마련은 귀찮고 거추장스런 일이나 낙농산업의 안정을 위하여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함.

II. 낙농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(안)

1. 낙농진흥법의 전면 개정 주요내용('97. 8.22 공포)

가. 낙농진흥계획의 수립 (법 제3조)

- 농림부장관은 낙농업구조개선,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 및 유제품 소비홍보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.
- 낙농진흥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나. 낙농진흥회의 설립 (법 제5조)

-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낙농진흥회를 설립함.
- 낙농진흥회는 축협중앙회와 낙농관련단체 등으로 구성함.
- 낙농진흥회는 정관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.
- 낙농진흥회는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계획 수립 시행, 원유의 구입 및 판매, 원유의 품질향상, 유제품의 수매 및 소비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.(법 제6조)

다. 원유의 계약생산, 구입 및 계약공급

(법 제9조, 제11조, 제12조)

- 낙농진흥회는 원유의 계약생산에서부터 계약공급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며
- 원유의 구입가격과 공급가격을 정하도록 하고
- 원유의 구입가격, 집유 및 판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참작하여 판매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에는 낙농진흥회 운영비 등이 포함됨.

라. 집유조합 및 집유권역 기준(법 제13조)

- 낙농진흥회는 원유집유조합지정과 집유권역 기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
- 원유의 집유, 원유의 생산계약, 원유공급계약 등의 업무는 축협중앙회 또는 집유조합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.

마. 낙농진흥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(법 부칙 제1조)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낙농진흥회설립위원회로 구성하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(법 부칙 제2조)

2. 낙농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입법예고(안)

가. 낙농진흥법시행령 개정령(안)

- (1) 낙농진흥회의 구성원인 낙농관련 단체의 요건을 규정함.
 -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자와 낙농분야에 학식이 있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생산자단체로서 농림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
 - 유가공업의 사업자 또는 법인을 회원으로 하는 유가공단체로서 농림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
- (2) 농림부장관은 낙농업과 낙농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낙농진흥계획을 매사업년도 개시 전까지 수립하도록 함.
 - 수립된 낙농진흥계획은 시·도지사, 축협중앙회, 낙농진흥회 및 낙농관련단체 등에 통지토록 함.
- (3) 낙농진흥회는 원유의 구입 및 판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성분별, 위생등급별, 용도별, 계절별 또는 계약초과물량 등에 대하여 차등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함.
- (4) 농림부장관은 수급안정 등을 위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.
- (5) 원유의 유통질서 유지 등 농림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부과 기준 및 부과절차를 정함.

나. 낙농진흥법시행규칙 개정령(안)

- (1)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농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계획 및 관리계획이 포함된 낙농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.

- (2) 낙농진흥회는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농림부장관, 시·도지사, 축협중앙회 및 낙농관련단체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.
- (3) 낙농진흥회는 원유의 생산계약과 공급계약의 표준화를 통해 계약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함.
- (4) 원유의 차등가격을 시행하거나, 등급 등의 가격체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도록 함.
- (5) 원유수요자는 원유의 공급계약 체결시에 연간 계약액에 100분의 6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낙농진흥회에 납부하도록 함.
 - 다만, 낙농진흥회는 재무구조나 신용도가 건실한 원유수요자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함.

III. 낙농제도 추진방향

1. 주요 과제의 정책방향

- 가. 원유생산에서부터 유제품의 소비단계까지의 산업안정을 위한 구조조정 실행
 - 낙농진흥계획에 의한 낙농산업의 구조개선
- 나.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마련과 실행
- 다. 원유 및 유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
 - 원유의 집유일원화와 검사공영화 조기 정착

2. 사업별 세부추진방향

- 가.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 수립
 - 농림부의 낙농진흥계획의 방침에 따라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 계획을 수립함.
 - 수급계획내용을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원유의 계약생산 및 계약공급에 적용함.
- 나. 원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방안
 - 낙농가와 계약 생산된 원유는 전량 구입하여 원유대를 계약기간내 지불하는 방안 강구.
 - 원유의 계약생산량 중 수요자에게 판매량 이외의 잔여분에 대하여는 수매를 검토하며
 - 원유수요자에게 원유공급방법을 공정하게 함으로써 유통질서를 확립토록 함.
 - 원유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성분, 위생등급, 용도, 계절별 또는 계약초과물량 등에 대한 차등가격제를 필요한 시기에 시행하여 수급과 가격안정을 기하도록함.
 - 원유의 과부족과 유가공공장의 폐업 등에 대비한 낙농가의 원유대 지급, 분유의 수매등 대책강구.
- 다. 원유의 계약생산 및 계약공급제 실시
 - 낙농진흥회에 원유를 판매 및 공급을 희망하는 낙농가 및 유가공업체와 원유의 계약생산, 계약공급제를 실시함.

- 원유를 생산하는 낙농가에게는 최대한의 자율생산을 하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납유량의 상·하한선을 정하여 계약하며 계약량을 전량 구입함.
- 원유수요자에게도 공급물량의 상·하한선을 정하여 계약하되 원유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함.
- 원유의 수요자에게는 계약보증금을 징수함.
 - 재무구조나 신용도가 높은 원유수요자에는 차등인하 적용함.
- 낙농가의 휴·폐업시 원유의 계약생산량 승계방법
 - 낙농진흥회에서 생산량을 보유관리함.
 - 조사료 생산기반 등을 감안하여 희망하는 낙농가에 배정함.

라. 원유 집유일원화와 검사공영화

- 원유의 집유는 집유조합중에서 도별 1개소를 지정
 - 집유조합으로 지정된 주체를 중심으로하여 미지정된 조합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
 - 원유집유조합의 집유조직과 비용은 낙농진흥회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.
- 원유가격결정과 품질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는 도지사가 실시함.
 - 원유집유과정의 현장검사는 집유조합에서 실시함.
 - 낙농진흥회와 계약한 낙농가의 원유 시료채취와 검사소까지의 운반은 집유조합에서 실시함.

마. 낙농진흥회 업무의 위탁

- 낙농가와와의 원유계약생산량, 원유구입 원유수요자와의 공급계약 및 판매업무 등의 일부를 정관에 정하여 축협중앙회장 또는 집유조합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.
- 원유의 구입가격과 판매가격 및 집유비 등은 낙농진흥회에서 결정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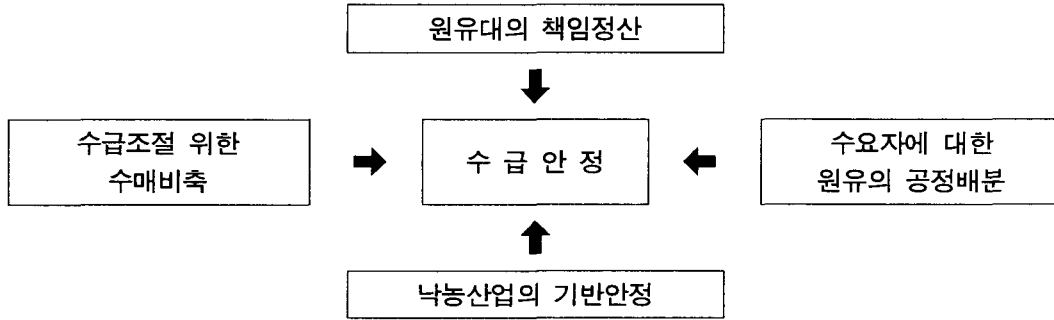
바. 집유조합의 지정기준과 방법

- 지정기준
 - 집유권역별 도단위 1개조합을 지정
 - 집유관리능력, 집유시설보유 또는 확보능력, 원유검사능력, 낙농가지도능력,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함.
 - * 낙농진흥법 시행령 제13조
- 지정방법
 - 기준모델을 설정한 후 그 모델에 가장 근접한 조합이 지정될 수 있는 평가항목을 마련하여 점수제에 의한 도별지정순위 결정.
 - 평가구분은 3종류, 평가항목은 16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.
 - 낙농조합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낙농조합의 능력이 부실하다고 축협중앙회장이 판단할 때에는 지역별 단위조합을 지정.

사. 집유조합의 조직과 운영

- 낙농진흥회 설립위원회 심의를 거친 기본방침내에서 축협중앙회 또는 집유조합과 협의에 의하여 정함.
- 집유조합의 조직운영비와 집유사업비, 기술지도비등은 집유비에 포함하여 계산함.
- 집유과정별 작업은 집유단계별 표준작업요령에 의함.

아. 수급안정을 위한 낙농진흥회의 주요역할



- 낙농산업의 기반안정 위한 제도마련
 1. 원유의 안정 생산 위한 낙농가 유지, 확보대책 마련
 2. 원유 및 유제품의 품질 경쟁력 확보위한 구조조정
 3. 수입유제품의 국내수요 잠식예방
 4. 건실한 낙농가, 집유조합, 유가공장 육성